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다5666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해
피고 3 외 1인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2. 선고 2008나117640 판결
판 결 선 고 2009. 1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정판결이 실제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 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2003. 6. 11., 소외 2가 2003. 11. 11.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손상과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자, 소외 1 및 그의 아들인 피고 1과 소외 2는 각각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각 소송에서 신체감정한 결과 소외 1의 기대여명이 13년으로 평가된 것을 기초로 2005. 11. 24. 소외 1에게 4억 9,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05. 12. 20. 확정되었고, 소외 2의 기대여명이 13.4년으로 평가된 것을 기초로 2007. 3. 8. 소외 2에게 247,176,2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돈을 소외 1의 후견인인 피고 2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소외 2에게 각 지급하였으나, 소외 1은 2007. 9. 21., 소외 2는 2007. 10. 12. 각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는 다음,

